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664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664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5162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조홍은

변론 종결 2021. 7. 8.

판결 선고 2021. 9. 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51622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화성시 C 임야 1,059m²에 관하여 2017. 11.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B에게 화성시 C 임야 1,059m²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11. 24. 접수

제2163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2행의 "이 사건 임야"를 "화성시 C 임야 1,0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7행의 "2018. 4. 17. 부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를 "2018. 4. 12.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에 따라 부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2018. 4. 17. 부실처리 품의 및 소외 회사와 B에 대한 재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6행의 "갑 제1 내지 5, 9, 10, 25호증"을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 24, 25, 31, 33호증"으로 고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16행의 "2018. 4. 17."부터 같은 쪽 18행의 "실시하였고"까지 부분을 "2018. 4.

12. 발생한 소외 회사에 대한 부실사유와 관련하여 2018. 4. 17. 부실처리 품의 및 소외 회사와 B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로 고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의 존재

갑 제1,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4호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E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를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B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별표 1>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된 500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에 대하여 등록 대상 공공기록정보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8. 4. 12.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4.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2018. 4. 12.자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148,000,000원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17. 11. 24.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관리규약 제12조 제1항 및 <별표 1>은 앞서 본 국세 체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된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 및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에 대하여도 등록 대상 공공기록정보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11. 24. 당시 조세 체납액이 110,021,250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2017년 4월부터 고용보험료를, 2016년 4월부터 산재보험료를 각각 연체 중이기도 하였다(2017년 8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연체한 내역도 확인된다).

(나)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도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B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11. 24. 당시 조세 체납액이 62,394,220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8. 8. 화성세무서장에 의한 압류 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소외 회사와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6년 10월부터 고용보험료를, 2017년 4월부터 산재보험료를 각각 연체 중이기도 하였다(2017년 9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연체한 내역도 확인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11. 24. 당시 이미 자력이 악화되어 조세 및 공적 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가 정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2018. 4. 12.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2.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8. 12. 21.까지 연장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외 회사와 B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조세 및 공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그 체납 시기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사전구상권 발생 사유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특히 소외 회사와 B의 각 조세 체납액이 이 사건 관리규약이 등록 사유로 정한 체납액 기준인 5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1심판결이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있는 이후에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567 판결)은 대출금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등의 사유로 대위변제에 따른 (사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연장된 사정을 부가적으로 설시한 것으로서, 그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11. 24.을 기준으로 채무자인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을 살펴서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재산가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는 부분은 그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분은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1) 적극재산

갑 제5, 12, 14, 16, 17, 19, 21, 23, 32,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11. 24. 당시 B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56,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임야	317,700,000
2	화성시 F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962,000,000
3	G 소재 토지 중 B 지분(1,167분의 473)	71,000,000
4	H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405,000,000
5	화성시 I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379,000,000
6	J 소재 토지 중 B 지분(1,298분의 265.936)	19,000,000
7	여주시 K 소재 토지 중 B 지분(13분의 2)	3,000,000
합계		2,156,700,000

(2) 소극재산

(가) 갑 제5, 12, 14,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2021. 2. 19.자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L,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11. 24. 당시 B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243,534,6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세 압류채무	62,394,220
2	N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13,019,450
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0
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가압류채무	213,400,000
5	O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5,903,000
6	P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3,818,000
7	L, M에 대한 2016. 2. 26.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75,000,000
8	M에 대한 2017. 5. 17.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
9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0,000,000
10	Q에 대한 2012. 6. 13.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00,000,000
11	R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00,000
12	S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00,000,000
13	T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0,000,000
14	Q에 대한	170,000,000

1	조세 압류채무	62,394,220
	2012. 2. 10.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	U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0,000,000) 1)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150,000,000원으로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한다.
합계		3,243,534,670) 2) 원고가 주장한 원고에 대한 채무액 150,357,490원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조세 압류채무액 62,394,220원을 인정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 합계액에 비하여 87,963,270원(=150,357,490원-62,394,220원) 감소하였다(한편 B가 체납한 고용보험료 등 공적보험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당시의 구체적인 체납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액 150,357,490원) 3) 도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1. 6.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표 순번 4 기재 채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6.자 2019카단806114 부동산가압류 결정(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B)에서의 가압류채무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2019카단806114 부동산가압류 결정의 청구채권은 '2016. 12. 26., 2017. 6. 23.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보증채무금'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2. 26.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이 소외 회사에 185,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표 순번 4 기재 채무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포함한 위 표 순번 4 기재 채무를 B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는 이상, B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도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동일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채무를 중복하여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소극재산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발생한 채무 또는 그 발생 원인이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극재산에 포함된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임이 인정되고 달리 그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성

B가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B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여러 채권자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피고는 2014. 5. 22.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직전인 2017. 11.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스스로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B와 2014년경부터 금전거래를 수년간 하면서 2017년경에 이르러 금전거래를 중지하고자 하였으나,

B가 어려움을 토로하며 계속 거래를 요구하여 부득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미 2017. 8. 8.에 화성세무서장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음이 인정되어 약의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세윤

판사정세진

판사김지영

1)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150,000,000원으로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한다.

2) 원고가 주장한 원고에 대한 채무액 150,357,490원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조세 압류채무액 62,394,220원을 인정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 합계액에 비하여 87,963,270원(=150,357,490원-62,394,220원) 감소하였다(한편 B가 체납한 고용보험료 등 공적보험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당시의 구체적인 체납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148,000,000원과 대지급금 2,357,49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인다.